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2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6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외 4명(박왕규, 임미연, 강한곤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검토기간: 2025. 1. 24.(금) ~ 1. 31.(금)

2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스마트팜의 운영 등(안 제5조)
- 기술 개발 및 보급(안 제6조)
- 교육 및 컨설팅 등(안 제7조)
- 스마트농업 홍보(안 제8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1. 23. ~ 2. 4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,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조성·운영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-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,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3. 7. 25.), 시행(2024. 7. 26.)되고 있으며,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, 교육 및 컨설팅 실시,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2. (생략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2.~11. (생략)